

대구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1가단14977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대구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임성우,곽경화,박한결

피 고 1. A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지민

변 론 종 결 2023. 1. 13.

판 결 선 고 2023. 2. 10.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0,695,893원과 그 중 50,500,983원에 대하여 2020. 6. 23.부터 2020. 12. 31.까지 연 10%의, 2021. 1. 1.부터 2022. 8. 30.까지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59,783,30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59,783,30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피고 A과 주식회사 C 사이의 대출계약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피고 A 은 2016. 9. 29. 주식회사 C(이하 ‘C’ 이라 한다) 과 50,000,000 원의 일반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6. 10.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피고 A 이 대출받을 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A 과 신용보증약정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서를 C 에게 발급하였다 .

- 다 음 -

(가) 보증번호 : D

(나) 보증금액 : 50,000,000 원

(다) 보증기한 : 2017. 9. 28. (이후 2020. 9. 25. 로 최종 변경됨)

2)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가) 보증채무의 범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뒤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고는 보증원금 범위 내에서 보증부대출의 원금,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보증부대출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율에 의한 미수이자액, C 이 보증부대출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중 원고의 정관 및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것의 합계액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구상채무의 범위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 은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외에도 이행일 이후의 원고의 정관이 정한 이율에 따른 손해금 및 그 지급에 소요된 비용 기타 원고의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재단정관이 정한 손해금율은 2018. 1. 1. 부터 2020. 12. 31. 까지는 연 10% 이고, 2021.

1. 1. 부터 현재까지는 연 8% 이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및 기타 채권의 발생으로 인한 구상범위

1)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 이 2020. 3. 5.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원고는 2020. 6. 23. C 에게 위 약정과 관련하여 50,500,983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기타 채권의 발생

위 약정과 관련한 원고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피고들의 재산에 가압류 등 법적절차비용으로 대지급금 194,910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A 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구상채무가 발생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A 은 2019. 12. 19. 피고 B 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한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 20. 접수 제 7809 호로 피고 B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호증 내지 16 호증의 각 기재

2. 주 장

1) 피고 A 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서 피고 A 은 원고에게 50,695,893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50,500,98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6. 23.부터 2020. 12. 31.까지는약정된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연 10%의, 2021.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2. 8. 30. 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사해행위취소 청구권의 존재 및 성립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위 1)항 기재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6. 10. 4. 경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2020. 6. 23. 경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피보전 채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피고 A 은 무자력이었으므로 피고 B 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A 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 는 사해의 의사나 인식에 관련하여 악의가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 는 피고 A 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가액배상청구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6,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E 주식회사 명의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F조합의 근저당설정등기 등을 모두 말소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액 548,000,000원에서 F조합의 피담보채무액 220,485,205원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50015호로 위 같은 달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피고 B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피담보채무 90,000,000원을 공제한 237,514,795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구상금 채권 59,783,302원(대위변제금 50,500,983원과 2020. 6. 23.부터 2022. 8. 4.까지의 약정지연 손해금률에 따른 손해금 9,087,409원 및 대지급금 194,910원의 합계액)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1) 선의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등 피고 A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리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2) 가액배상과 관련하여

피고 B의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 90,000,000원 뿐만 아니라, 피고 A은 2017. 4. 7. 소외 G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바 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5,000만원도 존재하였다.

따라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도 가액배상을 위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피고 A은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변론에서 명확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1) 피보전채권 성립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2016. 10. 4.경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2020. 6. 23.경 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무자력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들과 갑제1호증 내지 7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19988호 사건 중 관련증거)에 따르면 피고 A은 2014. 10. 27.경부터 2020. 1. 20.경까지 F조합에 대하여 220,000,000원의 대출채무를, C에 대하여 180,000,000원(신용보증기금과의 신용보증약정 관련)과 50,000,000원(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관련)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 A은 적극적 재산으로 2011. 3. 22.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19. 12. 19. 당시의 시가는 373,000,000원 상당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이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피고 A의 채무는 450,000,000원(= 220,000,000원 + 180,000,000원 + 50,000,000원)에 이르고, 적극재산은 373,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 A은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취소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피고 B가 사해의 인식이 있었던 사실은 추정된다.

피고 B의 선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나제1호증 내지 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4) 가액배상에 관련한 판단

가) 가액배상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각 F조합, 채무자 각 A, 채권최고액 각 178,440,000원, 23,160,000원, 62,400,000원으로 된 세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220,505,205원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피고 B는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채권을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할 책임이 있을 뿐이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이 사건 2022. 9. 23.자 H감정평가사무소의 시가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2022. 9. 16. 경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8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소유권이전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먼저 피고 B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후 F조합의 3개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피담보채무

220,505,205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금액은 공동담보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갑제9,12호증, 을나16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B는 2017. 12. 20.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치면서 피고 A에게 9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금원에 대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2018. 9. 28.경 피고 A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고 A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2018. 2. 27. 피고 A으로부터 위 금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 B의 아버지인 I이 2018. 9. 2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담보로 다시 A에게 돈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시기와 위 돈 50,000,000원의 대여시기, 근저당권자가 G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나제23호증 내지 제30호증의 기재 등만으로 I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피고 A에게 위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가액배상액의 확정

따라서 원고는 위 가액배상액 69,494,795원{= 380,000,000원 - 220,505,205원(F조합채무) - 90,000,000원(가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에게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위 가액배상액 69,494,795원의 범위 내인 이 사건 구상금채권액인 59,783,302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59,783,30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별지